

캘리포니아 법률로 보호소 내 차별 및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공정 고용 및 주택부

공정 고용 및 주택부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의 임무는 고용, 거주 및 공공 편의 시설 제공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로부터 그리고 증오 폭력 및 인신 매매의 범죄 행위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주택법은 긴급, 야간 및 임시 대피소를 포함한 모든 보호소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국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은 실제 또는 인지된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하는 보호소 내의 불법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합니다.

- 혈통, 출신국
- 시민권*
- 정신 또는 신체장애
- 가족 상태
- 성 정체성, 성 표현
- 유전 정보
- 이민 상태*
- 결혼 상태
- 군대 및 재향 군인 상태
- 주요 언어*
- 인종, 색
- 종교
- 성별
- 성적 지향
- 수입원

성희롱 보호소 직원과 거주자 사이, 또는 거주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성희롱에는 보호소에 머무르기 위한 성행위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성희롱에는 보호소에서의 거주를 어렵게 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기타 불쾌한 성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에 근거한 보호: 보호소 내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에 근거해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트랜스 젠더와 논바이너리가 포함됩니다. 보호소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거주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소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호소는 귀하의 몸(신체)에 대한 정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신체적 또는 의학적 증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호소는 모든 거주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소는 장애인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소에 직접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에서 거주하고 보호소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및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상태, 시민 상태, 주요 언어, 출신국: 노숙자 보호소는 보호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민 상태, 시민권 상태, 주요 언어 또는 출신국에 따른 다른 대우를 누구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캘리포니아의 공정 주택 민권법에 따라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보호 제도에 근거하여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DFEH 불만 사항은 마지막으로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제기

공정 고용 및 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수신자 부담: (800) 884-1684
TTY: (800) 700-2320
www.dfeh.ca.gov

* 연례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주거 시설에 적용됩니다